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• 의결

**안건번호** 제2023-007-071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

의결연월일 2023. 4. 26.

주 문

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3,000,000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이 유

# I. 피심인의 일반 현황

피심인은 학습 서적 출판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"보호법"이라 함)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이며,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	설립일자	주요서비스	상시 종업원 수

## Ⅱ. 사실조사 결과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접수( )된 건과 관련하여 제출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1.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 사실

피심인은 현장조사( )일 기준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한 근로자( )의 개인정보(성명, 생년월일, 입·퇴사일 등)를 파기하지 않고 업무시스템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.

## 2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였다.

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 법령의 규정

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,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.

「근로기준법」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

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2. 위법성 판단

피심인은「근로기준법」제42조에 따라 근로자 명부 등을 3년간 보관할 수 있으나, 보유기간이 지난 퇴직한 근로자 496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(개인정보의 파기)에 해당한다.

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[별표2]「과태료의 부과기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 가. 기준금액

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행위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적용한다.

< 과태료 부과기준 2. 개별기준 >

2111111121		<b>과태료 금액</b> (단위: 만원)		
위반행위 	근거 법조문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마.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 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4호	600	1,200	2,400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

피심인의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1. 라.에 규정된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가중 없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#### 1. 일반기준

- 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- 1)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다. 과태료의 감경

피심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또는 진술 등 조사에 협력하였고, 시정조치(안)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였으며,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기업(中企業)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%인 300만원을 감경한다.

#### < 과태료의 부과기준 >

#### 1. 일반기준

- 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라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 <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 >

과태료 처분의 근거		<b>과태료 금액</b> (단위:만원)			
위반 조항	처분 조항	기준 금액(A)	가중액 (B)	감경액 (C)	최종액 (D=A+B-C)
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 제1항	제75조제2항제4호	600	ı	300	300

<sup>※</sup> 피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, 100분의 20을 감경함(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)

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제3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75조 (과태료)제4항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# 2023년 4월 26일

위	원	장	고 학 수	(서	명)	)
---	---	---	-------	----	----	---